

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, 전시, 축제,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써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제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·단체 등이 주관·후원하는 행사 등을 국제문화행사로 정의함(안 제2조제1호)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연장,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1항).
-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
II. 검토의견

안 제19조는 국제문화행사 휘장 등의 사용 규정¹⁾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²⁾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제정안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조항만을 열거하고 있어 실제 어떠한 위반 행동을 하였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, 해당 의무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19조(과태료) ① 제14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 설> <신 설>	제1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-----. 1. 제1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하거나 광고,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자 2. 제1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
② (생 략)	② (제정안과 같음)

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

1) 안 제14조(국제문화행사 휘장 등의 사용)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·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,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상표법」 및 「디자인보호법」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2) 안 제1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